

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

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대상법인은 '18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5백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'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'19년 대비 2%·4%(최소 1명)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「일자리창출계획서」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이며, **2019. 12. 5일까지** 「일자리창출계획서」를 제출해야 합니다. (결과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)

<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>

'18사업연도 수입금액	3백억 원 미만	3백억 이상 ~ 1천5백억 미만
일자리창출 비율	2% 이상	4% 이상

☐ '18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5백억원 미만인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

*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,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

** '18사업연도('18년 1~12월 중 사업연도 종료)를 기준으로 판단,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(조특법 시행령§2②) 미적용

☐ '20년에 상시근로자* 수를 '19년 대비 2%·4%(최소1명)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「일자리창출계획서」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

* 상시근로자 = 해당연도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 / 해당연도의 개월 수
(청년은 2명 가중치 부여)

* 청년창업중소기업, 강소기업 : 증가된 고용인원을 1명을 2명으로 계산

☐ 제출방법 : 홈택스 >>> 신청/제출 >>> 신청업무 >>> 일자리창출계획서
세무서 법인납세과에 우편·팩스·방문 제출

☐ 제출기한 : 2019. 12. 5.(목)

※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,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인천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고은희 국세조사관(☎032-718-647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